

## 단순히 원문기사를 보충한 정정보도문도 적법해

함부르크고등법원 1987.5.14 자 판결

-3U 22/87 사건 -

### 적용법조

함부르크주 언론법 제 11 조

### 판시사항

원문기사가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준 적절치 않은 인상에 대한 반박을 할 목적으로, 단지 원문기사를 보충만하기 위한 사실상의 주장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정보도문도 역시 적법한 것이다.

### 판결이유

(중략)

II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법률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이 사건 정정보도문은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등의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이 사건 정정보도문은 원문기사에 대하여 하등의 불법적인 반박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1987년 1월 19일자 「화보비평」에서는 2가지의 조치를 취한 보도』 라는 제목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재 되어 있었다.

「일요일 저녁 8시 뉴스시간에 ‘Nurnberg에서는 핵, 반대’라고 외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데모자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자료화면을 방영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날 Baden-Wurttemberg 주의 Obrigheim 에 있어서는 1,400 명의 경영협의회 위원들이 핵에너지에 대한 찬성 및 확실한 일자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데모를 벌였었다. 그런데 위 노동조합회원들의 주목할만한 모임에 관하여는 단 한장의 장면도 보도되지 아니하였다.

위 경영협의회 회원들이 핵에너지에 반대하는 데모를 하였을 경우에도, 위 보도는 이것을 화면없이 말로써만 보도하였을 것인가? 」

위 원문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문이 주장되었다.

1987년 1월 19일자 X신문에는, 「2가지의 조치를 취한 보도」 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주장되었었다.

‘위 보도는 일요일(1987년 1월 17일) 저녁 8시 핵에너지 반대론자들이 주먹을 휘두르며 데모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위 보도는 (Baden-Wurttemberg 주) Obrigheim 에서 1,400 명의 경영협의회 위원들이 같은 날, 핵에너지에 찬성하면서 벌인 데모에 관하여는, 단 한장의 사진조차도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주목)하여야 한다. 저녁 8시에 방송된 위 뉴스프로는 위 Obrigheim 에서의 데모에 관하여 화면보도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구두로서만 보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녁 9시 50분에 방송된 뉴스시간에서는 위 데모에 관하여 여러장의 현장사진에 의하여 화면보도를 한 사실이 있는 것이다」

2. 위 정정보도문은 원문기사의 내용을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다. 또한 위 정정보도문은 의견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진실에 반하지도 않고 타인을 착각에 빠지게 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3. 뿐만 아니라 위 정정보도문은, 원문기사의 편집진에 의하여 보도된 사실관계를 부적법하게 확대하여 서술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1) 법적인 제도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떤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이와는 다른 자기자신의 주장을 게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 피해자에게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그 정정보도문이 문제로 삼고 있는 원래의 기사에서 주장된 사실상의 주장과는, 관념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1. 법적인 성질에 관하여는, Loffer, 3. Aufl., S. 555 ; Seitz/Schmidt / Scho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1980. S.51 참조).

(2)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정정보도문은, 위 원문기사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실상의 주장들을 진실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위 반박문의 서두에서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정정보도문은 원문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취지도 아닌 것이다.

(3) 그러나 정정보도문은 그 내용에 있어서, 원문기사에서 보도된 사실상의 주장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원문기사가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준 적절치 않은 인상에 대한 반박을 할 목적으로, 단지 원문기사를 보충만 하기 위한 사실상의 주장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정보도문도 역시 적법한 것으로서 허용된다는 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바이다. 위와 같은 경우는 특히 원문기사에 있어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한 본질적인 사정들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결과 결과적으로는 독자들에게 대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보도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다(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Loffler, S.556 m.w. N. . auch zur Rechtsprechung des Senats 참조).

따라서 일방적이거나 또는 불완전한 보도로 인하여 잘못된 인상이 심어질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원문기사에서 보도된 사실상의 주장이 서로 그 내용적인 면에서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원문기사의 내용이 하등의 잘못된 인상을 야기하지도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정정보도문이 독자들에게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였을 뿐으로 원문기사에 빠져 있는 사실을 보충함으로써 잘못된 사실보도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정보도문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정보도문은, 원문기사의 내용을 그 사실상의 점에 있어서, 더 깊이있게 하거나 또는 더 폭넓게 하는 역할조차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원문기사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정정보도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정정보도문은, 언론의 자유를 불법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Loffer, S.556 ; Urteil des Senats AfP 77,247 참조).

(4)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문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며 그 자체에 있어서는 틀린 점이 없었지만, 그러나 위와 같은 짧은 문장에 있어서의 「단 한장의 사진도 없이」라는 표현방식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없는 독자로서는, 언어에 의한 보도와 화면에 의한 보도와 사이에 있어서 효과상의 중대한 차이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 원문기사만을 읽고서는, 정정보도신청인이 Obrigheim 에 있어서의 사건에 관하여 저녁 8시의 뉴스시간에는 전혀 언급하지도 아니한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원문기사의 처음 2개의 문장에 있어서의 사실묘사와 그 기사의 제목에 의하여 독자들은 위와 같은 인상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원문기사의 3번째 문장이 「기껏 말로써만 언급되어졌다」라는 표현방법으로 구두에 의한 보도를 내포하면서, 나아가 전혀 언급되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추론을 확인하는 것같이 보여지고 있다. 위 「뉴스」 시간에 서로 상이한 2가지의 조치가 취해졌다는 신랄한 비난이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또한 위 화면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의 결여가 강조되면 될수록, 위와 같은 인상을 일반인의 자연스러운 이해에도 더욱 더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비난이 문자대로 해석하여 노동조합원의 모임에 관하여는 「단 한 장의 사진조차도」 보도된 바 없다는 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인상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보도문은, 저녁 8시의 뉴스시간에 이미, 비록 사진보도는 아니었지만, 구두에 의한 보도가 방송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이해시킴으로써, 원문기사에 의하여 독자들이 가지게 된 잘못된 인상을 적법한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되었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원문기사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는 점을, 정정보도문이 「저녁 9시 50분의 뉴스시간에는 사진보도까지도 행해진 바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위 정정보도문은 적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원문기사의 보도에 의하여 허위의 또는 변형된 인상이 야기되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원문기사의 내용과 서로 관련성을 가지는 전제조건하에서, 정정보도문은 보충적인 방법으로도 사실상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Loffer S.556 m.w.N.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정정보도문은 사실에 있어서, 사실상태의 완전한 묘사라고 하는 기사보도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여겨진다.